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0회 임시회 (2024. 8. 3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91
- 나. 제안자: 고병준 의원 외 7인
- 다. 제안일자: 2024년 8월 16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(월)

2. 제안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개정에 맞춰 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청년의 연령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와 같게 규정함(안 제2조제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
 - 2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24. 7. 23. ~ 7. 29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청년의 범위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의 개정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”라고 수정함.
 - 이는 추후에 동일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 2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2. (현행과 같음)
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,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으로써 마포구 청년 정책의 수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나, 마포구 청년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 운영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.
- 따라서,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붙임 1

청년 관련 마포구 자치법규 현황

○ 조례별 ‘청년’의 정의

(24. 8. 기준)

연 번	소관부서	조례명	조례상 청년 연령
1	복지정책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	가족돌봄을 하고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
2	고용협력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
3	건축지원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	제9조(빈집의 활용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인 사람 (생략)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.
4	어르신동행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제20조(주택의 입주대상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
5	고용협력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	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6	고용협력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	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7	고용협력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	“청년”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■ 「청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■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